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7,291,517	13,418,746
일반회계	435,373,737	13,061,212
특별회계	11,917,780	357,533
기타특별회계	11,917,780	357,53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61,828	34,855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12,107	36,363
건축진흥특별회계	576,333	17,29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501,313	15,03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602,652	18,08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23,963	3,71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0,060	2,102
드림빌특별회계	1,951,573	58,54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35,979	43,0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81,972	128,45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34,61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